

제 4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53조(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만료 예정일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안내하여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4조(계약목적)

- ① 이 규정은 입소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이용계약은 입소자 및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③ 입소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
 2.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4.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5. 입소자 결핵진단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감염병 진단서가 있는 경우 포함)
 6. 신체구속동의서(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성이 절박성,비대체성,일시성 일때만받음)
 7.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제55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① 입소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과 비급여(기타비용) 비용에 준하여 부담한다 (매년 운영위원회 회부)
- ②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장기요양법상 수가 연도별 별도 산정

2025년도 (1일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구분	등급	총급여 100%	공단부담금 80%	본인부담금 20%	식재료비 (간식포함)	총본인부담금 (20%+비급여)
일반	1	86,030원	68,830원	17,200원	9,000원	26,200원
	2	79,810원	63,850원	15,960원	9,000원	15,969원
	3,4,5	75,360원	60,290원	15,070원	9,000원	15,079원

구분	등급	총급여 100%	공단부담금 88%	본인부담금 12%	식재료비 (간식포함)	총본인부담금 (12%+비급여)
경감 (의료급여) 40%	1	86,030원	75,710원	10,320원	9,000원	19,320원
	2	79,810원	70,240원	9,570원	9,000원	18,570원
	3,4,5	75,360원	66,320원	9,040원	9,000원	18,040원

구분	등급	총급여 100%	공단부담금 92%	본인부담금 8%	식재료비 (간식포함)	총본인부담금 (8%+비급여)
경감 (의료급여) 60%	1	86,030원	79,150원	6,880원	9,000원	15,880원
	2	79,810원	73,430원	6,380원	9,000원	15,380원
	3,4,5	75,360원	69,340원	6,020원	9,000원	15,020원

구분	등급	총급여 100%	공단부담금 100%	본인부담금 0%	식재료비 (간식포함)	총본인부담금 (0%+비급여)
기초 수급자	1	86,030원	86,030원	0원	0원	0원
	2	79,810원	79,810원	0원	0원	0원
	3,4,5	75,360원	75,360원	0원	0원	0원

- ③ 그 밖의 비용부담액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및 경비 일체는 이용자나 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제5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 및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시설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 ②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 ③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 ④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 ⑤ 무연고자 사망 및 유류금품 등 은 지자체 보고 처리한다

제57조(계약의 해제)

-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 3. 입소자가 사망 또는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 4. 입소자가 입소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입소(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 5.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 6. 입소자의 고의나 중대한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 ② 제5호, 제6호의경우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때는 반드시 입소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8조(입소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본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보증금수납하지 않는다